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2. 9 선고 2020가단136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고1. B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웅

변론 종결2021. 1. 12.

판결 선고2021. 2. 9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24,495,175원 및 위 금원 중 10,124,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. 피고들 사이에 2016. 2. 18. 체결된 별지 목록(1)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

24,495,1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은 원고에게 24,495,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만 한다)는 2005. 10. 20.경 피고 B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, 위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.

2) 피고 B이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, D는 2019. 4. 3.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, 그 시경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3) 피고 B이 지급을 지체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20. 8. 5. 기준으로 원금 10,124,545원과 연체이자 14,370,630원이고, 위 원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23.7%의 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제3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D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4,495,175원(= 10,124,545원 + 연체이자 14,370,630원) 및 위 금원 중 원금 10,124,545원에 대하여 2020. 8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기초사실

1) E은 그 자녀로 F과 피고 B을 두고 있던 중인 1978. 9.경 피고 C과 혼인하여 G을 낳았다.

2) E은 2013. 12. 16.경 사망하였고, E의 별지 목록(2) 기재 각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 C이 3/9 지분,

F, G, 피고 B이 각 2/9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.

3) 피고 C은 2016. 2. 18. F, 피고 B과, 별지 목록(2)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F 및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[이하 위 계약 중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(1)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]하였고,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호증, 을 제6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피보전채권

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 24,495,175원 및 위 금원 중 10,124,545원에 대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양수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.

다. 사해행위

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(1) 기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,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 이외에, H카드, I카드,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하여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데(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84458 판결, 1999. 4. 9. 선고 99다2515 판결,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. 사해의사

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나, 한편 을 제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, 위와 같은 추정은 반복되었다.

-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은 E과 재혼한 사이로 피고 B와 친모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.
- ② 피고 C, B 등 상속인들은 E의 사망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, 피고 B은 2014.경부터 재산상속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 C의 주거지 물건과 자동차 등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 C을 괴롭혀 왔고,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.
- ③ 피고 C은 1983. 5. 15.경부터 별지 목록(2) 기재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, 2015. 12. 30.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거주지에 관한 불안이 발생하자, 자신의 거주지를 보전하고 피고 B의 괴롭힘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,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.
- ④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딸 G과 함께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.
-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전경훈

별지